#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8일 /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1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(2024. 11. 22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: 박선영 환경정책 과장)

#### 가. 개정이유

○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1.7.20. 공포, 2023.7.21. 시행)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O "공중화장실"의 정의 중 "간이화장실" 추가(안 제2조)
-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- O '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'에 따른 조문 정비

#### 다. 관련법령

O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4항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○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1.7.20. 공포, 2023.7.21. 시행)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.

#### ○ 종합검토 결과

- 안 제2조에는 공중화장실등의 정의를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, 유료화장실로 하여 기존 조례에서 제외된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음.
-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인용된 상위법규의 조항을 개정하여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공중화장실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.
- 안 제5조의2는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4항1)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비상벨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항에 설치시설을 규정하고자 함.
- 비상벨은 위급 상황시 누르면 경찰이나 119 등으로 바로 연결되는 장치로써, 최근 여성화장실 불법촬영, 성범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안전 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 관련 법령등을 검토 한 결과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<sup>1)</sup> 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.

- 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- 5. 토론의 요지 : 없 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참고법령

## ○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0. 12. 22.>

- 1. "공중화장실"이란 공중(公衆)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.
- 2. "개방화장실"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 · 군수 · 구청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.
- 3. "이동화장실"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.
- 4. "간이화장실"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.
- 5. "유료화장실"이란 화장실의 설치、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.
- 6. "공공기관"이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
- 제3조(적용 범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 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(이하 "공중화장실등" 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. <개정 2014. 1. 7., 2014. 1. 14., 2015. 1. 28., 2016. 3. 29., 2016. 12. 2.>
  - 1. 「자연공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
  - 2. 「관광진흥법」제2조제6호、제7호、제10호에 따른 관광지、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, 시、군 또는 구(구는 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"시、군、구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
  - 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
  - 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、제5호、제7호、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、임시

- 시장 · 상점가 · 전문상가단지
- 5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- 6. 「도로법」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
- 7.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
- 8. 「도시철도법」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
- 9. 「항만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
- 10. 「유선 및 도선사업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
- 11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
- 12.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
- 13. 「체육시설의 설치、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
- 14. 「공항시설법」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
- 15. 「공연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
- 16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- 17.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1. 7. 20.>

### ○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6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** ①법 제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. <개정 2013. 10. 16., 2014. 7. 14.>

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·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
- 2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
- 3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27호 중 공원·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
- 4. 「도로법」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(같은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 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
-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③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23. 7. 11.> [전문개정 2006. 11. 9.]

### ○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6조(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)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7. 1., 2011. 3. 31.>

## ◎ 관광진흥법

제52조(관광지의 지정 등) ①관광지 및 관광단지(이하 "관광지등"이라 한다)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. 다만,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의 기조지사가 지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8. 6. 5., 2009. 3. 25., 2018. 6. 12.>

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(같은 법의규정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「국토이용관리법」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·고시된 지역을 말한다)으로 결정·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 4. 5., 2011. 4. 14.>
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「환경영향평가법」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6. 12.>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(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)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8. 6. 12.>
- ⑤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7. 19., 2018. 6. 12.>
- ⑥시 ·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,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7. 19., 2018. 6. 12.>

### ◎ 항만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<개정 2020. 2. 18., 2022. 1. 4., 2023. 10. 24.>

1. "항만"이란 선박의 출입, 사람의 승선、하선, 화물의 하역、보관 및 처리, 해양 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、가공、포장、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 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.